

<별지 제20호><개정 2021.10.13.>

종합금융회사(자금중개회사·단기금융회사)업무폐지(해산)인가 신청서

1. 상호(명칭)
2. 대표자
3. 본점 및 지점등의 소재지 및 연락처
4. 업무
5. 폐지(해산)의 사유
6. 폐지(해산)예정일

■ 첨부서류

1. 업무폐지(해산)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1부
2. 업무를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무의 종목에 관한 서류 1부
3.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후의 정관
4. 해산의 경우 청산사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
5. 최근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각 1부
6.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
7. 예금자 등에 대한 조치와 그 자산, 부채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1부
8. 해산 및 폐지절차 진행에 관한 일정 계획 1부
9.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계약서 1부
10.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9조제1항
(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)에 따라
위와 같이 업무의 폐지(해산)에 관한 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

서명 또는 인

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